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지침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의 지정,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자(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대수, 위치) ①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의 CCTV는 총4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 위치 및 설치대수
지하(2대)	물리치료실 1대, 복도 1대
1층(8대)	수급자생활실 3대, 엘리베이터 1대, 공동거실 1대, 식당 2대, 주출입구 1대
2층(11대)	수급자생활실 7대, 프로그램실 1대, 공동거실 1대, 복도 2대
3층(11대)	수급자생활실 8대, 공동거실 3대
4층(9대)	수급자생활실 7대, 골동 거실 2대
외부(6대)	1층외부(정면 2대, 측면 1대, 후면 1대), 4층 외부 1대, 옥상 1대
총계	48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 제13호 서식 안내판을 현관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관리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40만 화소)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 x 96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관리실에 있는 DVR 장비
6. 영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장소 : 상담실
7.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및 삭제 주기 : 보관기간 60일 경과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상담실로 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 확인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3.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시설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CCTV 영상물(열람,존재확인)요청서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열람 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열람 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파기 된 경우
 - ②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③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④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4.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⑤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5.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상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2조(CCTV 사용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제13조(화상정보 처리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하는 경우
7.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한다.

제17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끝.

[별지 제 2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20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수급자 수: 명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황성군수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수급자 수: 명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지 제 6 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황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 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황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 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황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illegible]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 23. . . ~ ' 23. . . 까지

[illegible]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10mm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황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황성군노인전문요양원 대표자 귀하